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05
----------	-------

발의연월일 : 2024. 1. 25.

발 의 자 : 윤한홍 · 이달곤 · 김도읍
권성동 · 윤창현 · 엄태영
유경준 · 이인선 · 송석준
강민국 · 김희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6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6제2항 전단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를 ““신분보장등조치”로”로 한다.

제9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1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p>	<p>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삭제></p>

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p> <p><u><신 설></u></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u><단서 삭제></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이행강제금)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신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단서 삭제></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p>
<p>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p>	<p>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제</p>

<p><u>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u> 다.</p>	<p><u>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u> <u>정</u>----- --.</p>
<p>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생 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u>제</u> <u>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u> 다.</p>	<p>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제16</u> <u>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 --.</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5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p> <p>③ (생략)</p>	<p>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 ----- ----- “신분보장등조치”로 ----- -----.</p> <p>③ (현행과 같음)</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생략)</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p>